

이사회 운영규정

2018.	12.	21.	제	정	규정 제12호
2024.	03.	29.	개	정	규정 제41호 [1]
2024.	08.	12.	개	정	규정 제45호 [2]
2026.	07.	01.	개	정	규정 제62호 [3]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루닛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2장 구 성

제4조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(독립이사, 기타비상무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 [3]

제5조(의장)

-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이사회 결의로 의장을 대표이사 외의 이사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 의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, 대표이사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선임된 사내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회 의

제6조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위원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[2]

제7조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일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[2]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. [2]

제8조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 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(1) 주주총회의 소집 (및/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)
 - (2) 영업보고서의 승인
 - (3) 재무제표의 승인
 - (4) 정관의 변경
 - (5) 자본의 감소
 - (6)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·이전,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 등 [2]
 - (7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 - (8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 - (9) 이사,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[2]

- (10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- (11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- (12) 현금, 주식, 현물배당 결정
- (13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(14) 이사의 보수 [2]
- (15) 상법 제542조의9에 따른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[2]
- (16) 법정준비금의 감액
- (17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(2) 중요한 신규사업 추진 [2]
- (3)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
- (4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5) [삭제]
- (6) 공동대표의 결정
- (7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(8) 이사회 내 위원회(감사위원회 제외) 위원의 선임 및 해임 [1]
- (9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.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
- (10)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
- (11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(12) [삭제]
- (13) [삭제]
- (14) [삭제]
- (15) [삭제]
- (16) 중요한 사규, 사칙의 규정 및 개폐
- (17) 지점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 [2]
- (18) 간이주식교환,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주식교환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[2]
- (19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(1) 코스닥 공시규정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타 법인 등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 [2]
- (2)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의 100분의 [5] 이상의 유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[2]
- (3) 양수 또는 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의 100분의 [5] 이상인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 [2]

- (3-2) 코스닥 공시규정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[5] 이상의 자금 차입 [2]
- (3-3) 코스닥 공시규정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[5]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, 채무보증과 인수 및 면제, 금전 및 유가증권 등의 대여 및 가지급 [2]
- (4) 결손의 처분
- (5) 코스닥 공시규정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[5] 이상의 신규시설투자, 시설외투자, 시설증설 또는 공장의 신설 및 개폐에 관한 사항 [2]
- (6) 신주의 발행
- (7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- (8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9) 전환사채의 발행
- (10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11) [삭제]
- (12)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
- (13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- (14) 자기주식의 소각

4. 이사 등에 관한 사항

- (1)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- (2)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- (3) 타회사의 임원 겸임

5. 기 타

- (1) 중요한 소송의 제기
- (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(3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- 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[2]
- 2-2.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[2]
- 2-3. 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의 선임 및 해임 [2]
- 2-4. 제9조 제1항 제3호 재무에 관한 사항 중 부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[2]
- 3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10조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3. 위원회(감사위원회 제외)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[1]
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11조 [삭제]**제12조 (관계인의 출석)**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3조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14조(의사록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 [2]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15조(간사)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
제4장 보 칙

제16조(준용규정)

제8조 제1항, 제2항, 제3항, 제4항 및 제14조의 규정은 이사회 내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제17조(경비지급)

이사회, 이사회내 위원회에 참석한 독립이사, 감사위원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인사 등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[2] [3]

부 칙(2018.12.21.)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8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3.29.) [1]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8.12.) [2]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6.07.23.) [3]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